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6 선고 2022가단5162975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개인회생채무자 A

원고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4. 12.

판 결 선 고 2023. 4. 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에 관하여 2021. 3.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582,3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20. 12. 11. 원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주식회사 C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1,900만 원, 보증기간 2025. 12. 1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22. 1. 12. 주식회사 C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보조참가인이 2022. 5. 19. 주식회사 C에 19,191,847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3. 10.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 3. 18.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보조참가인은 2022. 6. 2.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구하고, 1) 피고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가액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원고는 2022. 6. 17. 서울회생법원 2022개회1064487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22. 8. 22.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보조참가인의 채권도 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22. 11. 18. 위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지 않았다.

바. 원고는 2022. 11. 4.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고, 원고보조참가인이 2023. 4. 11. 보조참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으며,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소를 부인의 소로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계하였으므로,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취지의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부인의 소로 변경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즉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정

별지

1) 원고보조참가인은 2023. 4. 11. 원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